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 주 문 화 원

<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정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임원선출에 관한 총회(이하 ‘선거일’로 한다.) 운영규정에 의거 본원의 임원선임에 대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원 임원선임에 적용한다. 다만, 원장과 감사를 제외한 기타 임원은 본 규정 제21조(전형위원회의 구성)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임원선임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원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4주 전에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은 정관 제7조 및 회원관리 규정 제4조와 제5조 ①항 2호에 해당하는 회원중에서 7인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원장 또는 이사회의 임원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권한이 상실되며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선거종료 후 임원선임에 따른 법인등기를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 ④ 위원장은 별지 제1호에 의거 선거일을 공고할 때 별지 제2호의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원은 임원 선임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작성
2. 입후보자 등록사무
3. 선거운동과 계도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5. 선거공보 발행
6. 당선인의 결정

7.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 유권 해석
8. 기타 임원선임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임원선임 직무를 통할한다.
- ④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⑤ 위원회에는 임원선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원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선거권)

임원선임의 선거권은 정관 제7조 및 회원관리 규정 제4조와 제5조 ①항 2호에 의한 회원으로 한다.

제9조(선거인명부 작성)

- ① 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별지 제3호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라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 9일 전까지 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 ①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열람은 별지 제4호에 의하며 선거인명부는 반출할 수 없다.
- ②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위원회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 결정하고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입후보자 자격) ① 원장 입후보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 중 2년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 한하여 임원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단,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2조(후보자 등록)

- ①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한 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원장에 선임되고자 하는 회원은 공고된 기일 내에 임원 선거 공고에 따른 서류를 갖추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3. 범죄사실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

4. 소견서(A4용지 1면 이내-명함판 사진 첨부) 1부
5. 이력서
6. 최종학력증명서
7. 공명선거 서약서
8. 입후보 등록금 영수증 사본
9. 선거운동원 명단 1부
10. 사진3매(4X5cm)
11. 개인정보동의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을 시에는 별지 제5-1호의 등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가. 형사 소추 중인 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10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금은 삼백만원(₩3,000,000)으로 정한다.

제13조(입후보자 사퇴) ①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 또는 문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일에 본인이 직접 구두로 사퇴할 수도 있다.

② 입후보자에게 등록확인서를 교부 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후보자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은 임원선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사용 잔금은 본원 기금에 귀속한다.

제14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① 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 되면 입후보한 회원의 명단을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본원 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등록중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거일 15일 전에 위원장이 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 장소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운동 및 제한)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전일 24:00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입후보자의 성명, 주요경력, 소견내용(본인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별지 제20호의 선거공보를 배부하여야 하며, 입후보자 개인의 홍보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사안별

로 위원회에서 경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

1. 금품으로 상대후보를 매수, 포기시키거나, 강박에 의한 상대후보 사퇴 등의 행위.
2. 선거권자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선거권자 접촉시 다과(음료) 이외를 제공하는 행위.
4. 명백한 불법이나, 흑색선전으로 상대방 후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등.

제17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③ 대리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투표용지) ① 별지 제8호의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선거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 및 개표는 선거일에 실시한다.

제20조(당선인 결정) ① 입후보자가 다수일 때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 동수이면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②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신임투표는 하지 아니하며,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선인 공고를 한다.

④ 당선인이 당선무효로 확정될 경우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전형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신규임원들은 신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전형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선거일에 승인을 받는다. 단, 감사는 선거일에 선출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회원관리규정 제4조와 제5조 ②항의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 중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 당일 임원 정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관 제13조 ④항에 따른다.

제22조(입후보 자격취소) ① 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 위반행위로 3차례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소명을 들은 후,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입후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입후보 자격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선거의 정리) ①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한 후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선임된 임원의 임기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후보등록이 없는 때) ①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당선인 공고를 한다.

제2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결위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임원선출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이의 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휴일 제외)내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 이의 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휴일 제외) 내에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선임 관리지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일반사회의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